환경영향평가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2019. 5. 23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목차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2. 협의내용 관리실태 및 최근 위반사례

3. 최근 법령개정 사항

4. 참고사항

- ▶ 평가사업장 우수·미흡 사례
- ▶ 드론 활용

5. 질의 응답

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 의 의

○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 사후환경영조사를 포괄하는 단계로 **영향평가의 마지막 단계**

□ 목 적

○ 협의내용 반영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 변화되는 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저감방안을 보완함으로써 환경영향 최소화

○ 협의 후 급박한 상황변화에 대처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자원관, KEI,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 사후환경영향조사

○ 목 적

- 환경영향평가시 영향예측 결과와 실제 환경영향평가의 일치 여부 확인
- 착공 후 발생하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 방지

○ 조사 기간

- 영향 정도에 따라 공사 완료시, 공사완료 후 3년 또는 5년으로 구분

○ 조사결과 제출 등

-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환경부고시 제2018-50호, 3.30)
- 피해발생시 신속한 조치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 평가협의 시 협의기관장이 제시한 항목(환경기준 비설정항목)

□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기관 주요 검토 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통하여 평가시 예측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환류체계 구축)

- 협의의견(보완서, 추가자료 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검토
- 협의의견 및 평가서 제시 내용이 현재 상황과의 차이점 및 개선방안
- 우수, 미흡 사례집 발간을 통해 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 최근 검토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가서 거짓·부실이 의심되는 사항을 지적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관련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가이드라인 등 지침 숙지 후 작성

☞ 해양환경분야는 해양환경관리법 규정에 적합한 사업자가 수행(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협의기관의 검토의견 항목별 조치사항 반영결과 제시

○ 이행시기 미도래 협의내용 : 이행계획 또는 설계 반영 내용 제시

○ 평가시 항목별 영향예측 결과와 사후조사결과 체계적 비교 평가

○ 사후조사결과 환경기준 초과 등 중요사항 변화시 원인분석 필요

☞ 환경기준 초과 원인을 외적요인으로 만 제시(구체적 조사결과 제시 필요)

○ 불필요한 조사지점 → 협의내용 변경절차 거쳐서 제외

○ 해당년도 사업부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경사진 제시(ex 드론 촬영 등)

○ 에너지 사업 : 예비가동 시기를 사업개요 또는 현황에 명시

○ 산업단지, 도시개발의 경우는 환경영향 확인을 위한 입주, 분양자료 제시

Ⅱ 협의내용 관리실태 및 최근위반사례

◆사례①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원형보전지역에 대하여 훼손하였음에도 불구,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보전하고 있음"으로 적시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거짓 작성

⇒ 사업자 : 수사의뢰(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2호 위반), 과태료(제34조제1항 위반)

평가업자 : 수사의뢰 및 업무정지 6개월(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위반)

◆사례②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에 대하여 현장확인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현황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평가서를 부실 작성한 사례

⇒ 사업자 : 수사의뢰(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34조제1항 위반)

평가업자 :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위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 인정정지 6개월(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위반)

◆사례③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변경등록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초과하여 변경등록을 하여 행정처분(경고)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에 기술인력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

⇒ 대행업자 : 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제2항 위반)

◆사례④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아니하여야 하나 무등록 사업자에게 재대행을 한 사례

⇒ 대행업자 : 업무정지 6개월

※ 현재 우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제27637) 제11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별표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2018년12월31일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위반확인서 징구 중

Ⅲ 최근법령 개정 사항

□ 2017.11.28. 공포(2018.11.29. 시행)

○ 원상복구 및 과징금 부과, 소규모평가 변경협의, 주민의견 재수렴, 거짓평가서 재평가, 재대행승인제 도입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

평가법	위임사항(시행령 · 시행규칙)
과징금 부과(법제40조의2)	(령) 위반행위 종류 · 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및 부과절차
소규모평가 변경협의(법제46조의2)	(령) 소규모평가 변경협의 사유 구체화
과태료(법제76조)	(령) 과태료부과기준 정비(과태료 상향)
주민의견 재수렴(법제15조, 제26조)	(규칙) 의견수렴절차상의 흠 등 재수렴 사유, 신청기간, 절차, 최소 신청인원 등 구체화
거짓평가서 재평가(법제41조)	(규칙) 재평가 대행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
재대행승인(법제56조)	(규칙) 재대행 승인 신청 서류 및 절차
위반사실공표(법제66조의2)	(규칙) 공표 내용 및 방법

□ 2018.06.12. 공포(2018.12.13. 시행)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사업착공 통보 내용 공개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 및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평가법	위임사항(시행령 · 시행규칙)
사후환경영향조사(법제36조제3항)	(령)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 및 공개 방법·시기 위임 (7일이내,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사업착공 등의 통보(법제37조제2항)	(령) 공개주체·공개시기 구체 적으로 위임(해당 시·군·구, 7일이내)

○ 환경영향평가 원칙 추가(5개 원칙 → 6개 원칙, 법제4조)

※ 환경적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 ·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

○ 평가 대상지역 外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 대상 확대(법제13조)

– 생태계 보전가치가 큰지역 → 환경훼손,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한 지역 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거짓 · 부실 검토(평가법 제8조1항5호)

○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함.

□ 시행령 제3조 2호(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제53조 제5항 제2호 또는 제5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환경부장관이 구성 ·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

□ 시행령 제6조의 3(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전문위원회 신설)

○ 거짓 · 부실검토위원회에서 거짓 또는 부실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10명 내외로 구성(환경부장관이 임명 · 위촉)

가.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환경관련 협회, 단체, 공사 · 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절차 마련 [평가법 제17조4항(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28조4항(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48조제5항 신설

○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3.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검토내용의 공개(평가법 제36조3항)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조치결과 및 조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시행령 제55조의 2

○ 환경부 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때에는 검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시행령 55조의2)

4. 사업 착공 통보 등의 공개(평가법 제37조)

○ 사업자는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이하 “사업착공등” 이라 함)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내용을 통보하여야 함(별지 제8호서식)

○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착공등을 평가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시행령 제 55조의 4

○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 하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지역신문에 1회이상 공고 하여야 함

5.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평가법 제40조의2)

○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주민생활, 국민경제, 그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대통령령에 따라)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시행령 제56조의 2

○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총 공사비(계약금액)의 3% 과징금 부과

※ 계약 미체결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과징금)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금액

6.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변경협의(평가법 제46조의2)

○ 사업자는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 시행령 제63조의 2(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①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② 사업규모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포함) ③ 협의받은 부지면적의 30% 이상의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누적포함) ④ 원형보전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토록 한 지역을 5%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포함) ⑤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계획 확정한 후 5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승인기관장과 환경부장관 협의 경우 제외)

○ 변경협의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7.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평가법 제76조)

□ 시행령 제78조 별표10 개정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준수,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

위 반 행 위 내 용	1차 (현행)	2차 (현행)	3차 (현행)
(제36조제1항 위반)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500 (경미 300) (중요 500)	700 (경미 300) (중요 500)	1,000 (경미 300) (중요 500)
(제40조 제1항 또는 제4항 위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조치명령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미이행	2,000 (1,000)	3,500 (1,500)	5,000 (2,000)
(제41조제3항 위반)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	2,000 (1,000)	3,500 (1,500)	5,000 (2,000)
(제49조제2항 위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미이행	500	700	1,000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직 개정 주요 내용

1.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절차 등(평가법 제15조 및 제26조 제2항, 제3항 신설)

○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함.

○ 의견 재수렴 신청기간, 절차 최소 신청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 7조의2 및 제12조의 2,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①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공하지 않은 경우, ② 20일 미만의 기간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③ 공고 및 공람 실시한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④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⑤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⑥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⑦

○ 재수렴 절차 : ① 공람기간이 종료된날(공청회가 끝난 날) 로부터 7일이내 신청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③ 최소신청 인원 30명(5명 이상인 경우 : 의견 제출한 주민의 총수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거짓평가서 재평가 근거 및 재평가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 규정 마련(평가법 제41조)

○ 거짓평가서 확인 → 환경부장관(승인기관의 장과 협의) 재평가기관에 재평가 요청 可 → 재평가기관 재평가 실시(기간 1년이내) → 재평가기관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장에게 평가결과 통보

○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사업자 비용 부담)

□ 시행규칙 제22조의 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 : ①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선정, ②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③ 재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와 재평가기관이 협의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평가법 제56조1항5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 해당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함

□ 시행규칙 제26조의2

○ ① 승인신청서 발주자에게 제출 ② 적정성 검토 후 7일이내 신청인에게 통보(7일이내 통지기간 연장 可)

※ 신청서 : 재대행하려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요, 규모, 금액,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업무 명세서

※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함

4.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66조의2)

○ 사전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시 사업장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 공표 可

– 예외 사항 : 사업의 폐지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

※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 · 내용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Ⅳ 참고 사항

▶ 평가사업장 우수·미흡 사례

① 자연생태환경분야

미흡 사례



우수 사례



■ [미흡] : 사람이 이용하는 겸용생태통로(기능저하)
[우수] : 사람 이동이 없는 생태통로(기능유지)

▶ 평가사업장 우수·미흡 사례

① 자연생태환경분야

미흡 사례



우수 사례



■ [미흡] : V형 탈출 측구(급경사_이용 불가능)
[우수] : V형 탈출 측구(경사도 고려_효율성 유지)

▶ 평가사업장 우수·미흡 사례

② 대기환경분야

미흡 사례



우수 사례



■ [미흡] : 토사 적치면 방치(미세먼지 발생 원인)

[우수] : 토사 적치면 방진망 설치

▶ 평가사업장 우수·미흡 사례

③ 수환경분야

미흡 사례



우수 사례



■ [미흡] : 침사지내 준설 미실시(효율성 감소)
[우수] : 주기적 준설 실시(사면부 방수막 설치)

▶ 평가사업장 우수·미흡 사례

③ 수환경분야

미흡 사례





■ [미흡] : 강우시 가배수로 토사 유출 및 세굴 현상 발생

▶ 평가사업장 우수·미흡 사례

④ 생활환경분야

미흡 사례



우수 사례



■ [미흡] : 부지정지 작업시 살수 미실시(비산먼지 발생)
[우수] : 부지정지 작업시 살수(소방차 자체구입) 지속적 실시

▶ 평가사업장 우수·미흡 사례

④ 생활환경분야

미흡 사례



우수 사례



■ [미흡] : 가설방음판넬 높이 부적정

[우수] :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적정 설치

▶ 무인항공기(드론)활용 분야

① 사후관리 미흡사례 확인



■ [미흡] : 침사지 유입부 붕괴 확인

▶ 무인항공기(드론)활용 분야

① 사후관리 미흡사례 확인



■ [미흡] : 사업지구 절토사면 붕괴 확인

▶ 무인항공기(드론)활용 분야

② 대구지방환경청 지도점검(석산개발사업장 '19.5.10)



석산개발 사업장 훼손지



석산개발 사업장 복원모습

▶ 무인항공기(드론)활용 분야

② 대구지방환경청 지도점검(태양광발전소 사업장 '19.5.17)



태양광발전소 사업장 전경



태양광발전소 전기실

V 질의응답